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4 -
“학생들의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공약 발표

-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 소득·재산·대학원 종류 따른 제한 문제… 학부생 소득 하위 48% · 일반대학원생 27%만 대상자 선정
- 학비 및 생활비 걱정으로 아르바이트, 휴학 고려… 이자 부담으로 신용유이자 전락도
- ICL 대상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성적 우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3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높은 수준의 학비 부담을 줄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등록금 대출로 인해 사회 진출 전 신용유이자로 전락하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 면서도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분뿐이다” 라며 해당 공약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게 되면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 종류이다. 일반학자금 대출과 달리 ‘소득 발생’ 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종 요건에 따라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ICL은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에 해당하는 8구간 이하만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대학원생은 소득 하위 27%인 4구간

이하만 해당한다.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비율의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이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 후보는 ICL 중 성적요건 폐지와 일반대학원으로까지의 이용 범위 확대, 대출금리의 1%대로의 인하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학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학부생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이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향후 8구간까지로 이용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또한 현행 본인에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간병이나 생계 운영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졸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금이나마 부채를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생활비를 대출하려고 할 때 국가가 까다롭게 조건을 붙이거나 자격심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건 완화나 이용 대상 확대 등의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붙임 [참고자료]

□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법률 개정으로 2022년부터 일반대학원생(4구간 이하)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법률 개정으로 2022년부터 성적 요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소득하위 48% 이하)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파산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동금리(연 1.70%, '21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금리(연 1.70%, '21년 기준) 	
대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는데, 적용 대상과 소득기준, 신용요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

방법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일정한 상환기준 소득에 도달한 이후부터 초과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측면에서 재학중 이자 납부 부담이 없고, 신용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음.

- 하지만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학원생은 제외되어왔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로 일반대학원생에 한하여 (4구간 이내)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이 가능해지게 됨.(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제외)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학원생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상당수 국가는 ‘취업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만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부모 소득 및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산정하여 소득하위 48%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함으로써 수도권 가정 자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이 어려워 핵심적인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음.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이용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6월)
취업후	금액	9,046	8,379	8,777	8,215	4,076
	인원	379,450	359,866	382,886	361,802	165,838
일반	금액	8,391	9,698	9,555	8,940	4,758
	인원	237,413	267,965	263,802	241,102	121,160
합계	금액	17,437	18,077	18,332	17,155	8,834
	인원	616,863	627,831	646,688	602,904	286,998

-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연간 24만~26만여 명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을 얻지 못해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이용 실적 중 일반학자금은 이용자 기준 40.7% / 금액 기준 51.8% 차지)
-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청년 채무발생의 주된 사유로 학자금 마련이 꼽히고 있음.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청년 채무발생 사유('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거비 마련(42.9%), 학자금 마련(34.1%), 생활비 마련(12.0%), 창업자금 마련(7.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 해결에 기여

□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올해까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자격도 주어지지 않다가 올해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로 일반대학원에 한해 4구간까지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해짐.
- ※ '2020년 기준 등록금 평균 : (학부) 연간 673만원 (대학원) 연간 883만원
- 이공계 및 의약계열 대학원생은 연구비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대학원생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특히, 전일제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수업의 연구·논문 작성 등으로 학비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이 1,452만원(최고 : 고려대 1,950만원 / 최저 : 충남대 965만원)에 이르고 있음.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취약계층이 1,057명(4,837백만원 : 1인당 평균 458만원)이나 되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학생중 3분의 1이 넘는 학생이 평균 1,076만원이나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백만원)	20,149	22,604	23,393	24,110	24,743
인원(명)	2,006	2,158	2,209	2,290	2,299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천원)	10,044	10,475	10,590	10,528	10,763

※ 등록금 및 생활비 포함 / 1·2학기 인원 중복 제거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절박한 청년들

-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20대 후반~30대 청년들 상당수는 가계를 부양해야 하지만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 갑작스러운 상황

이 발생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2018년 9월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일반 학자금 대출은 그 이전부터 시행)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실직·폐업·육아휴직	
	인원	금액
2018년	775	12
2019년	3,515	52
2020년	6,731	94

-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 경우 2018년 9월부터 이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절박한 청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줌.
- ICL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상당기간 동안 의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즉시 상환 유예 가능
- 다만, 현행 제도는 본인만 해당되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 적극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학(원)생에게 힘이 되는 생활비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대출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후	등록금	7,233	9,129	12,007	12,550	10,739	8,387	6,940	4,822	4,350	4,661
	생활비	1,223	1,744	3,142	5,261	5,647	5,318	5,043	4,224	4,028	4,116

- 2010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을 도입한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비중의 차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생활비 대출은 2013년부터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국가장학금이 2012년부터 도입된 이후 점차 적용 대상과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8구간 이하는 등록금의 국가장학금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반면 생활비 는 학자금 대출은 의존도가 늘어나게 된 것임.
※ 생활비 대출은 현재 기초~4구간(소득하위 26.6%)까지 무이자 적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모의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학생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연간 300만원의 대출 한도액을 500만원까

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

○ 학부생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방식 누구나 신청

- 부모님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격 부여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재학중 이자 납부 부담없이 취업후 일정 소득 발생 이후부터 기준 소득 초과액 대비 일정 비율로 원리금 상환(신용불량 우려 해소), 부모의 소득·재산 등을 산정하여 8구간까지(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 소득하위 48%) 이용 가능
 - * 최근 5년간 이용자 기준 40.7%, 대출 금액 기준 51.8% 일반 학자금 대출 이용

○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 ICL 이용 자격 부여

- 비싼 등록금에도 일반학자금 대출만 가능한 전문대학원에 경제적 사정에 관계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ICL제도 적용
 - * 2021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2022년부터 일반대학원 4구간까지 ICL 이용
 - *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평균 등록금 1,452만원 / 2021년 2,299명이 평균 1,076만원 대출
- 일반대학원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확대
 - * 현행 4구간까지(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 : 소득 하위 26.6%) ⇒ 8구간까지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적용 요건 확대

- 본인의 폐업·실직·휴직 등 학자금 상환 어려운 상황 발생시 즉시 유예(ICL 2018년부터 시행) ⇒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의 심각한 질병·폐업 등 대출을 상환하기 곤란한 상황 확대 적용

○ 성적 우수 대출이용자 원리금 탕감 제도 도입

-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 졸업성적 기준 성적 우수자 중 저소득층 일정 비율에 대해 원리금 탕감 추진
 -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성격으로 가볍게 사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격려

○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 연간 300만원 한도(월평균 25만원)인 생활비 대출을 500만원(월평균 42만원)까지 상향 조정